

● 제328회 ●  
서울특별시의회(임시회)  
제1차 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자원과 아동 보호에  
관한 조례안  
검 토 보 고 서

2025. 2. 25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  
수 석 전 문 위 원

## 【 홍국표 의원 발의 】

의안번호 2349

### I. 조례안 개요

#### 1. 발의자 및 제안경과

가. 발 의 자 : 홍국표 의원 (찬성 35명)

나. 발 의 일 : 2025. 2. 3.

다. 회 부 일 : 2025. 2. 6.

#### 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##### 가. 제안이유

- 「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경제적·심리적·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를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에게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

- 서울특별시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.
- 지역상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-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-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- 지역상담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- 지원된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)
-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)
- 비밀 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0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)

다. 입법예고 (2025.2.11.~2.15.) 결과 : 의견없음

## 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임영미)

### 1 조례안의 개요

- 2023년 10월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소재 및 안전 문제가 제기<sup>1)</sup>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회에서 ‘출생통보제’ 및 ‘보호출산제’ 도입을 위한 관계 법령이 통과되어 시행되었음.

#### 〈‘출생통보제’ 및 ‘보호출산제’ 관계 법령〉

구분	내용	관계 법령
출생통보제	의료기관이 통보한 출생 아동 정보를 바탕으로 시·읍·면장은 부모의 출생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누락 시 최고하고, 필요시 직권 출생기록 <sup>2)</sup>	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(‘23.7.18.) 및 시행(‘24.7.19.)
보호출산제	위기 임산부가 일정 수준의 상담을 거쳐 의료기관에서 가명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태어난 아동은 출생 등록 및 보호조치하고 기록관리 <sup>3)</sup>	「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」 제정(‘23.10.31.) 및 시행(‘24.7.19.)

- 본 제정안은 「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위기임신보호출산법” 이라 함)이 지난해 7월 시

1) 감사원, 기관별 감사결과(보건복지부 정기감사), 2023.10.19. ‘출생 미신고 아동의 보호 및 관리 체계 불합리’  
2) 보건복지부, 보도자료, ‘출생통보제, 위기임신 지원 7월 19일 시행, 준비 상황 철저히 점검’, 2024.5.24., 붙임2. 출생통보제 개요  
3) 보건복지부, 보도자료, ‘출생통보제, 위기임신 지원 7월 19일 시행, 준비 상황 철저히 점검’, 2024.5.24., 붙임3.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개요

행됨에 따라 상위법령 내용을 반영하여 시장의 책무와 사무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하기 위함임.

<조례안의 제명 및 조문 배열>

서울특별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	
제1조(목적)	제7조(지정취소 등)
제2조(정의)	제8조(비용의 환수)
제3조(시장의 책무)	제9조(협력체계 구축)
제4조(지역상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)	제10조(비밀 누설의 금지)
제5조(위원회)	제11조(시행규칙)
제6조(보호출산의 지원)	부 칙

- 17개 시·도의 「위기임신보호출산법」 관련 자치법규 입법현황을 살펴보면 대전광역시를 포함한 9개 시·도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, 서울특별시와 대구광역시에서는 관련 조례가 상임위에 접수되어 있는 상태임.

<「위기임신보호출산법」 관련 광역단위 자치법규 입법현황>

(2025.2.12. 기준)

NO	구분	조례명	입법현황	시행여부
1	서울	서울특별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안	계류 중 (25.2.3 제안)	△
2	대구	대구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	계류 중 (25.1.31. 제안)	△
3	제주	제주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·상담 지원 조례	제정 및 시행 (23.8.7.)	○
4	충남	충청남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	제정 및 시행 (24.7.10.)	○
5	세종	세종특별자치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·상담 지원 조례	제정 및 시행 (24.7.12.)	○
6	강원	강원특별자치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	제정 및 시행 (24.3.8.)	○
7	대전	대전광역시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 조례	제정 및 시행 (24.8.2.)	○

8	경남	경상남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조례	제정 및 시행 (24.9.26.)	○
9	전남	전라남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	제정 및 시행 (24.10.4.)	○
10	충북	충청북도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 보호 및 지원 조례	제정 및 시행 (24.11.1.)	○
11	경기	경기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	제정 및 시행 (25.1.2.)	○
12	부산	-	-	×
13	인천	-	-	×
14	광주	-	-	×
15	울산	-	-	×
16	전북	-	-	×
17	경북	-	-	×

## 2 주요사항 검토

### □ 시장의 책무(안 제3조)

- 안 제3조(책무)는 상위법 「위기임신보호출산법」을 반영하여 동 조례안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수행해야 할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.

< 「위기임신보호출산법」 과 조례안 대비표 >

구분	위기임신보호출산법	조례안
제 3 조 (책무)	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. <u>이 경우 직접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.</u>	①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라 한다)은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그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. <u>이 경우 직접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</u>

		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.
	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와 자녀인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	② 시장은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와 그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- 「위기임신보호출산법」 제정 당시 가명으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 제도 도입에 따른 임신부의 원가정 양육 포기 가능성이 늘어나고, 자칫 합법적으로 장애아동 등을 유기하는 통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인권단체 등의 목소리가 높았음<sup>4)</sup>.
- 이에 「위기임신보호출산법」 제3조 제1항 후단에서는 ‘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임산부가 직접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’고 규정하고 있으며, 뿐만 아니라 동 법 제7조 제2항에서는 ‘지역상담기관에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에게 자녀인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과 안내를 제공’하도록 하고, 동 법 제13조 제1항에서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 신청 후에도 ‘해당 아동이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전까지 신청을 철회’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최대한 자녀를 원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음.

4) 프레시안, 최용락 기자, 2023.10.8. ‘국회 통과한 ‘보호출산제’...정의당 반대토론, 인권단체 비판 성명 이유는?’

< 「위기임신보호출산법」 제3조 제1항, 제7조 제2항 및 제13조 제1항 >

**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직접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.

**제7조(위기 임신·출산 등에 대한 상담)** ② 지역상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에게 자녀인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충분한 상담과 안내를 제공하여야 하며 가능한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.

**제13조(신청 철회와 아동의 보호 등)** ① 제9조(보호출산 신청)의 신청인은 제9조에 따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아동의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「입양특례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까지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.

- 이러한 상위법 제정 당시 배경과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안 제3조(책무) 후단에서도 ‘시장이 위기임산부를 지원함에 있어 원가정 양육을 위한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’는 규정하고 있음.
- 집행부서(서울시 여성가족실 가족담당관)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상담기관이 지정 및 운영된 2024년 7월 19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50명의 위기임산부가 지역상담기관에서 상담 후 출산을 하였고, 이 중 한부모가족시설에 입소한 경우를 포함해 총 34명(68%)의 자녀를 출산한 모가 직접 양육하고 있으며, 앞으로도 위기임산부가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해 보임.

<서울시 내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상담 후 양육현황>

(24.7.19~12.31기준, 단위:명)

출산아동 합계	원가정 양육		원가정 분리	
	자택 거주	(한부모가족복지) 시설 입소	입양진행	아동양육시설 등
	23	11	11	5
50 (100%)	34 (68%)		16 (32%)	

□ 지역상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(안 제4조)

- 안 제4조는 「위기임신보호출산법」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기임산부 지원과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의 지역상담기관 지정과 수행 업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.

< 「위기임신보호출산법」 과 조례안 대비표 >

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6조(상담기관의 지정·운영)	조례안 제4조(지역상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)
② 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「지역보건법」 제10조에 따른 보건소,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지방의료원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을 <b>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</b>	①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.
③ 지역상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위기임산부의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상담·정보 제공 및 필요한 서비스 연계 2. 아동 보호에 관한 상담·정보 제공	② 지역상담기관은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위기임산부의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상담·정보 제공 및 필요한 서비스 연계 2. 아동 보호에 관한 상담·정보 제공

<p>및 보호조치 연계</p> <p>3. 보호출산에 관한 상담·정보 제공 및 지원</p> <p>4.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입력과 기록관리</p> <p>5. 위기임산부 상담 전화 운영</p> <p>6. 그 밖에 위기임산부의 출산·양육 지원 및 그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<u>보건복지부령</u>으로 정하는 업무</p>	<p>및 보호조치 연계</p> <p>3. 보호출산에 관한 상담·정보 제공 및 지원</p> <p>4. 법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입력과 기록관리</p> <p>5. 위기임산부 상담 전화 운영</p> <p>6. 그 밖에 위기임산부의 출산·양육 지원 및 그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<u>법 시행규칙 제4조</u>에서 정하는 업무</p>
<p>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의 시설기준, 종사자 자격기준, 온라인·모바일 상담, 상담전화 운영,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<u>보건복지부령</u>으로 정한다.</p>	<p>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상담기관의 시설기준, 종사자 자격기준, 온라인·모바일 상담, 상담전화 운영,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<u>법 시행규칙 제5조</u>를 따른다</p>
	<p>④ 시장은 지역상담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</p>

- 서울시는 「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5)에 따라 2023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‘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단’을 운영해왔으며, 2024년 7월 19일자로 「위기임신보호출산법」이 시행됨에 따라 보호출산 대응 등 지역상담기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존 통합지원단 업무를 통합·확대하여 ‘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’를 2024년 8월 21일부터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음.

5) 「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(지원사업)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  
1.~7. (생략)  
**8. 위기 임신·출산·양육 지원 사업**  
9.~10. (생략)

<보호출산제 시행 대비 위기임산부 통합지원 확대6)>

구분	2023년(통합지원사업단)	2024년(통합지원센터)
접근·발굴	24시간 핫라인 구축(전문상담인력 3교대) ◦ 1551-1099(콜센터), 카톡채널	운영인력 4→10명으로 확충(~6월) ◦ [기존]위기임신 지원 + [추가]보호출산대응(7월~) ※ 지역상담기관 운영(7월~)
지원	긴급 보호	+ '24년 강화 위기임산부는 소득 관계없이 한부모시설 입소(7월~) ※ 24세 이하 위기임산부, 출산지원시설 소득기준 폐지(1월~) 가정 같은 양육환경의 쉼터 마련(10호, 연도내)
	자원 연계	
	출산지원시설(7개, 중위소득 100% 이하) 민간 위기임산부의집(3개, 소득기준 없음)	
	공공 사회복지제도 정보제공 및 연계 (미혼모 재정지원, 보편적 임신·양육지원 등)	

- 또한 안 제4조 제4항에서는 시장은 지역상담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
<조례안 제4조(지역상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) 제4항>

④ 시장은 지역상담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-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지방보조금법”이라 함)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으며, 「위기임신보호출산법」 제19조 제1호에서는 시장이 지역상담기관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 제4조 제4항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짐.

6) 제323회 임시회,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, p.26. 2024.4.23.

## <지역상담기관 운영비 보조 관련 법령>

### 「지방보조금법」

제6조(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.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「위기임신보호출산법」

제19조(경비의 보조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1.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의 운영비
2. 제16조제2항에 따라 출생증서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 수행경비
3. 제21조에 따른 위탁업무를 처리하는 심사평가원 및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(이하 “건강보험공단”이라 한다)의 업무 수행경비

## □ 보호출산의 지원 (안 제6조)

- 「위기임신보호출산법」 제10조 제3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임부의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, 그 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지사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.
- 이에 안 제6조에서는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시장이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부가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짐.

<보호출산 지원 관련 법령과 조례안 대비표>

위기임신보호출산법 및 시행규칙	조례안 제6조(보호출산의 지원)
「위기임신보호출산법」 제10조(보호출산의 지원)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	<u>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</u>
「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규칙」 제9조(산전 검진 및 출산 비용 지원)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<u>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</u>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<u>산전 검진 및 출산 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정한다.</u>	

□ 지정취소 및 비용환수 (안 제7조, 8조)

-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시장이 지역상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고, 지역상담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보호출산 신청인이 부정수급한 경우 지원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
<위기임신보호출산법과 조례안 대비표>

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20조 및 제22조	조례안 제7조 및 제8조
제22조(지정취소) ① <u>보건복지부장관은</u> 중앙상담지원기관 또는 <u>지역상</u>	제7조(지정취소 등) ① <u>시장은</u> 지역상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

<p>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<u>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</u>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</li> <li>2.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</li> <li>3.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</li> </ol>	<p>하는 경우에는 <u>지정을 취소</u>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<u>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</u>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</li> <li>2.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</li> <li>3.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</li> </ol>
<p><u>제20조(비용의 환수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의 신청인</u>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<u>지원된 비용을 환수</u>할 수 있다.</p>	<p><u>제8조(비용의 환수)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된 비용을 환수</u>할 수 있다.</p>
<p>② <u>보건복지부장관은</u> 제22조제1항에 따라 중앙상담지원기관 또는 지역상담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9조제1호에 따른 <u>운영비를 환수</u>할 수 있다.</p>	<p>② <u>시장은</u> 제7조에 따라 지역상담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<u>지원된 비용을 환수</u>할 수 있다.</p>
<p>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환수 방법 및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	

- 안 제7조(지정취소 등)와 안 제8조 제2항(지정취소된 지역상담기관 비용 환수)과 관련해서 「위기임신보호출산법」 제20조 제2항 및 제22조 제1항에서는 ‘보건복지부장관’이 지역상담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할 수 있고, 지정 취소된 경우 ‘보건복지부장관’이 운영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동 법 제24조(권한의 위임)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‘보건복지부장관’의 해당 권한을 ‘시·도지사’에게 ‘위임’하고 있어 안 제7조 및 제8조 제2항

은 법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여짐.

<지정취소 등과 비용 환수의 권한위임 법령>

「위기임신보호출산법」

제24조(권한의 위임)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「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」

제11조(권한의 위임)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한다.

1.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상담기관에 대한 운영비 환수
2.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역상담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

○ 다만 안 제8조 제1항(보호출산 신청인 부정수급 환수)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의 보호출산 신청인의 부정수급 환수와 관련해 「위기임신보호출산법」 제20조 제1항에서는 보호출산 신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, 동 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이를 시·도지사에게 별도로 위임하고 있지 않아 시장이 보호출산 신청인의 부정수급을 직접 환수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됨.

<보호출산 신청인 부정수급 환수 관련 상위법령>

「위기임신보호출산법」

제20조(비용의 환수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의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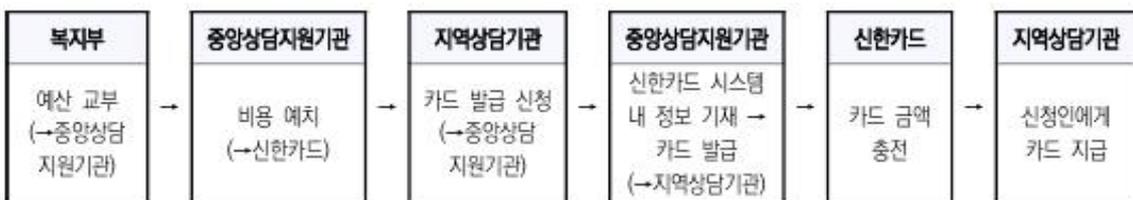
「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」

제11조(권한의 위임)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한다.

1.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상담기관에 대한 운영비 환수
2.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역상담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

○ 이와 관련해 상위법령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부정수급 환수대상은 보호출산 신청인이 신원 노출 우려로 각종 사회보장급여를 신청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「위기임신보호출산법」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비로 무기명 선불카드를 통해 직접 지원하는 의료비(1회당 100만원)와 출산 후 숙려기간 동안 필요한 비용(일 20만원, 최대 7일 지급)으로 보여짐.

<무기명 선불카드 발급 등 비용 지원 절차7)>



○ 반면 「위기임신보호출산법」 제10조 제3항에서 보호출산 신청인에게 지방자치단체도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「2024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사업 안내」에서도 국비 매칭 없이 지방비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하여 보호출산 신청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, 안 제8조 제1항은 시장이 일부 또는 전부의 지방재원으로 보호출산 신청인에게 산전 검진 및 출산 지원하고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시장이 이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여짐.

7) 「2024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사업 안내」, p.153.

- 「지방보조금법」 제34조<sup>8)</sup>에서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 제8조 제1항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짐.

### 3 종합 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위기임신보호출산법」이 2024년 7월 19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보호출산의 지원, 지역상담기관의 지정 등 시장의 사무를 규정하고, 위기임산부 지원과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됨.
-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집행부서는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인 아동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함.

문 의 처  
(02-2180-8148)

8) 「지방보조금법」 제34조(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
2.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3.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